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3호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 제72조에 의거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나.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다.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마.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바. 집합투자·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운용 관련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 사.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에서 지정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펀드부문, 리츠부문, 경영부문 상호간, 각 부문내 투자부서 상호간 및 운용부서 상호간 차단대상정보의 정보교류를 제한함. 다만, 해당 투자건의 투자부서와 그 운용부서간, 각 부문간 또는 부서간 협업을 위한 경우 그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정보교류를 허용하며, 지정된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과 지정된 후선부서는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부당유용 금지의무를 부담함.

나.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1) 집합투자재산, 리츠투자재산, 고유투자재산, 기타 투자기구(PFV 및 SPC 포함)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2)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3)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가. 거래주의 목록 및 지정기준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정보에 직접 관련된 임직원 이외의 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 거래가 가능함.

- 1) 거래에 회사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2)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금융거래 관련 자문을 하기로 한 경우
- 3) 회사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나. 거래제한 목록 및 지정기준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 운용부서 및 정보를 입수한 유관부서의 임직원은 거래가 제한됨.

- 1) 특정발행인과 관련하여 널리 일반에 알려진 거래에 회사가 투자자문, 매매·중개, 인수인, 공동주간사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 2) 당사가 운용하는 상장리츠
- 3) 당사가 영향을 미치거나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장증권
- 4) 기타 사회통념상 회사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가. 이해상충우려 있는 거래의 유형

- 1) 당사(이하 임직원 포함)와 투자자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정보
- 2)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정보
- 3) 당사 또는 당사가 운영하는 투자기구가 직·간접적으로 양 거래상대방에 관여하는 거래
- 4) 당사 또는 당사의 투자기구가 당사운영 투자기구의 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
- 5) 당사 또는 당사의 투자기구가 당사운영 투자기구의 피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
- 6) 기타 당사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래

나. 대응방안

이해상충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률상 금지되는 경우는 물론,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간 정보교류차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해상충있는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추구 금지
- 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도록 조치하고,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제한
- 다. 이해상충 발생 우려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및 관리
- 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식별기준을 마련하여 설정하고,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담당조직을 설치·운영
- 마. 상시정보교류 허용 임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을 지정하여 관리·감독
- 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비대상 부문간의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 사.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접근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하는 등의 예외적 교류원칙을 정의하고 후선업무목적의 예외적 교류 허용
- 아.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및 이해상충 유형별로 관리하고, 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과 임직원 교육 실시